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안내문]

■ 대상

일반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거나,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 주택 임대사업자, 주거용으로 사용,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님

■ 환급신청 절차

① 신고시기: 분양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②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아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계약호수 및 계약자 성명, 이메일주소 기재하여 팩스 발송 → 발송 후 수령 확인 전화

보내실 곳: 시행위탁자(주)마메중 / 전화번호: 051-782-8474 / 팩스: 051-782-8475

발급하는 자: 분양대금 - 시행위탁자(주)마메중

발급시기: 각 납부시기(계약시, 매회 중도금약정일, 잔금 시)별 대금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 발급.

단, 분양대금의 건물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가 발행됨

※ 계약 시에는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발급하여 이메일 전송됩니다.

④ 세금계산서 수령한 후 세무서에 환급 요청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발급일로부터 익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능. 15일 이내 환급됨

※ 유의사항

1. 명의변경 시, 매수인은 기 발급 완료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새로운 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명의변경 이후,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수자로 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계약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송부하여 주시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에는 계약자님의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10년 이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세무서에서 추징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괄양수인 경우에는 제외)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님께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울산세무서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49

- 전화: 052-259-0200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